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
· 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
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년 2월 19일

서울특별시 중구 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주민자치위원회,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자치회관의 시설 등 중구민 우선 이용 규정 추가(안 제11조제1항)

- 중구 주민등록자 자치회관 시설 등 우선 이용 내용 추가

나.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금지 내용 추가(안 제20조의2)

- 주민자치위원 해촉 이후 1~2년 내 재위촉 금지 규정 추가

다.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운영규정 신설(안 제24조~제29조)

-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설치, 기능, 구성, 직무,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함으로써 제도적 근거 마련

라.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기준 개정(별표)

-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를 면적에 따라 10,000원~30,000원으로 세분화
- 감면대상은 중구 주민등록자로 1인2강좌로 한정
- 다둥이카드 소지자, 중구 토박이 감면대상에 추가
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할인기간 만료에 따른 감면규정 삭제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자치 행정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자치행정과, 전화 : 02-3396-4566, 팩스 : 02-3396-8613, email : bk79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구청장은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재위촉 금지)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으며, 제2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.

제4장(제24조부터 제29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

제24조(설치)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협조·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고 한다)를 둔다.

제25조(기능)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
2.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, 연구, 개발
3. 중구 주민자치 관련 행사의 주관

4. 주민자치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

5.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협의

② 협의회는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.

제26조(구성 등) ① 협의회는 제17조에 따른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 임원으로 회장 1명, 부회장 2명을 두고,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간사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.

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,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④ 고문은 3명 이내로 하되, 협의회는 회장을 역임하고 주민자치 발전에 관심과 지식,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가 추천 및 동의로서 추대한다.

제27조(직무)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.

제28조(회의)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,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제29조(운영경비 등)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

필요경비, 사업비,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4조를 제30조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(협의회)

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, 이 조례 시행 당

시의 위원회(협의회)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

까지로 한다.

【별표】

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기준

□ 사용료 등 징수기준(제10조제3항 관련)

구분	단위	대 상	상한 금액
사용료	1시간	50㎡미만	10,000원
		50㎡이상 ~ 100㎡미만	15,000원
		100㎡이상 ~ 150㎡미만	20,000원
		150㎡이상 ~ 200㎡미만	25,000원
		200㎡이상	30,000원
수강료	월	프로그램 이용자 (레크리에이션, 생활체육, 일반강좌)	30,000원

※ 사용료 징수기준은 최초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50%를 가산한다.

※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.

□ 사용료, 수강료 감면기준(제10조제5항 관련)

구분	감면 비율	대 상	비 고
사용료	100	· 국가·공공 및 직능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	
	50	·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	
수강료	100	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	중구 주민등록자 감면적용
		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소년·소녀가정 포함) ·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모·부자 가정 ·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(65세 이상) ·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(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) · 서울 중구 토박이	

※ 수강료 감면은 중구 통합 1인 2강좌로 제한함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이용 등) ①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제11조(이용 등) ①----- ----- . 다만, 구청장은 중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0조의2(재위촉 금지)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으며, 제2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장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</p> <p>제24조(설치)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협조·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고 한다)를 둔다.</p> <p>제25조(기능)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 2.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

<신 설>

수립, 연구, 개발

3. 중구 주민자치 관련 행사의 주관

4. 주민자치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

5.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협의

② 협의회는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.

제26조(구성 등) ① 협의회는 위원은 제17조에 따른 각 동의 주민자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 임원으로 회장 1명, 부회장 2명을 두고,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간사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.

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,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④ 고문은 3명 이내로 하되,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주민자치 발전에 관심과 지식,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 추천 및 동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24조 (생 략)

의로서 추대한다.

제27조(직무)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.

제28조(회의)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 회의,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협의회 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제29조(운영경비 등)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, 사업비,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0조 (현행 제24조와 같음)

【별표】

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기준

사용료 등 징수기준(제10조제3항 관련)

구분	단위	대상	상한금액
사용료	1시간	다목적회의실, 사랑방 등	10,000원

※ 사용료 징수기준은 최초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50%를 가산한다.

※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.

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(제10조제5항 관련)

구분	감면비율	대상	비고
사용료	100	· 국가·공공 및 직능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	
	50	·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	
사용료 및 수강료	100	· 국민기초생활수급자 · 저소득 모·부자가정 · 소년·소녀가장 ·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· 등록된 장애인 · 경로우대자(65세 이상)	
	10	·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)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	삭제

【별표】

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기준

사용료 등 징수기준(제10조제3항 관련)

구분	단위	대 상	상한금액
사용료	1시간	50㎡미만	10,000원
		50㎡이상 ~ 100㎡미만	15,000원
		100㎡이상 ~ 150㎡미만	20,000원
		150㎡이상 ~ 200㎡미만	25,000원
		200㎡이상	30,000원

※ 사용료 징수기준은 최초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50%를 가산한다.

※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.

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(제10조제5항 관련)

구분	감면비율	대상	비고
사용료	100	· 국가·공공 및 직능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	
	50	·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	
수강료	100	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	
		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소년·소녀가정 포함) ·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모·부자 가정 ·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(65세 이상) · 다동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(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) · 서울 중구 토박이	중구 주민 등록 자 감면 적용

※수강료 감면은 중구 통합 1인당 2강좌로 제한함